

의안번호	제155호
의결 연월일	2003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조례규칙심의회

심  
의  
의  
결  
사  
항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자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제안연월일	2003년 월 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안

1. 안 건 명 :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2. 제안이유

-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 상위 법령에 맞게 규정 정비
  -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의료보호법 제21조”를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로 하고
  -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의료보호사업”을 “의료급여사업”으로 함.
- 기금관리공무원 자정
  - “기금관리공무원중 기금담당관은 복지환경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보장담당사무관”으로 함.
-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신설
  -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되 기능은 “충청북도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함

4. 의안전문 : 따로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6. 관계법령 발췌 : 따로붙임

### 7. 제안자 의견

상위법인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어 이에 따른 용어의 정리와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의 제명, 제1조 및 제7조제2항중 “의료보호기금”을 각각 “의료급여기금”으로 한다.

제1조중 “의료보호법 제21조”를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로 한다.

제3조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사업보조금”을 “의료급여사업보조금”으로 한다.

제3조 및 제5조제2항중 “보호대상자”를 각각 “수급권자”로 한다.

제4조중 “의료보호사업”을 “의료급여사업”으로 한다.

제5조제4항중 “시·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시·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도지사는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담당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담당관은 복지환경국장으로서,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보장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설치·운영)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되 그 기능은 충청북도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별지 제2호서식)

## 기 관 명

우	주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담당주사	담당자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 신 : 충청북도지사 발신 : (시장·군수) ㉠

참 조 :

제 목 : 의료급여기금 운용현황( 분기)

## 1. 기금조성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이월액	국고보조금	지방비 출연금	대불 상환금	부당이득금, 과징금등	기타 수입금
당분기							
누 계							

## 2. 기금운용실적(지출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분기 미지급액	예탁금	지급액	미지급액	위탁(심사및 지급)수수료	대불금	행정경비등
당분기							
누 계							

※ 지급액란에는 심사결정금액,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지급액을 포함함.

## 3. 대불금 운용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대불금	타시·도 전입금	타시·도 전출금	대불상환금	결손처분	미상환금
당분기		( )	( )			
누 계		( )	( )			

※( )내서는 도내 타시·군 전입금 기체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이하 “기 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 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세입과 세출)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 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 다)에 대한 의료보호사업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p> <p>제4조(보조금의 교부신청) 시장·군수는 의료보호사업에 담당하기 위한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 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p> <p>제5조(보조조건) ① (생략) ② 시장·군수가 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보호대상자에게 대부할 경우 그 대부금은 무이자로 하고 9월 내지 3 년 이내에 3월마다 이를 분할하여 상환 토록 한다. ③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del>의료급여기금</del></p> <p>제1조(목적) <del>의료급여법 제25조</del> <del>및 제26조</del> <del>의료급여기금</del></p> <p>제3조(세입과 세출) <del>의료급여법</del> <del>수급권자(- “수급권자” -)</del> <del>의료급여사업보조금</del></p> <p>제4조(보조금의 교부신청) <del>의료급여사업</del></p> <p>제5조(보조조건) ① (현행과 같음) ② <del>수급권자</del> 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④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의무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u>시·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u> 심의를 거쳐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부담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p>	<p>④- - - - - - - - - - - - - - - <u>시·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u> - - - - - - - - - - - - - - -</p>
<p>제6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기금출납원이 필요한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칭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p>	<p>제6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도지사는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담당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담당관은 복지환경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보장담당사무관으로 한다.</p>
<p>제7조(보고등) ①(생략) ②시장,군수는 분기별로 <u>의료보호기금</u>의 운용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분기종료후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7조(보고등) ①(현행과 같음) ②- - - - - <u>의료급여기금</u> -</p>
<p style="text-align: center;">&lt; 신 설 &gt;</p>	<p>제8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운영) <u>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되 그 기능은 충청북도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u></p>
<p>제8조(준용) (생략)</p>	<p>제9조(준용) (현행과 같음)</p>
<p>제9조(예비비) (생략)</p>	<p>제10조(예비비) (현행과 같음)</p>



## 관계법령 발췌

### □ 의료급여법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②~③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및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 ⑤~⑥(생략)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③(생략)

④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의료급여법시행령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생략)

②시·도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 시·군·구의 의료급여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생략)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 시·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②-③(생략)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⑤(생략)

⑥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과 각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9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①시·도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도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도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제41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②(생략)